



정 관

주식회사 스키눌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스키놀”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kinnol, Inc. (약호 Skinnol 또는 스키놀)이라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체외진단용 제품, 원료, 보조시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명공학 관련 전자상거래업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 이미용기 제조, 수출입 및 도소매업
1.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 판매, 유통업
1. 모바일 관련 솔루션 개발, 도소매, 판매, 유통업
1. 통신, 촬영장비, 연구, 제조업
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1. 의료정보 플랫폼 및 개인건강정보 플랫폼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 의료 관련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온라인 정보 매개 서비스업
1.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1. 각호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수출입업
1.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1. 각호에 관련된 기술자문용역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건물의 임대업
1. 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설립, 운영 또는 투자
1. 사내벤처 투자, 창업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터 활동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 등에 출자, 연구소 운영, 경영컨설팅, 기업컨설팅 및 이에 관련되거나 수반되는 업

###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kinnol.com](http://www.skinnol.com))에 전자공고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한다.

## 제 2 장 주식과 주권

###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 주의 금액)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 주로 하며,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0 원으로 한다.
- ②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 주(1 주의 금액 5,000 원)로 한다.

### 제 6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10 주권, 1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5 종류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7 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주식, 기타의 재산으로 우선배당함과 우선비율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이 회사가 유상증자(본항의 유상증자에는 주식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 8 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잔여분배대상이 되는 재산인 현금, 주식, 기타의 재산으로 우선배당하며 우선비율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이때 잔여재산가액의 결정은 상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③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되는 주당 잔여재산의 금액이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되는 주당 잔여재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본 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본항의 유상증자에는 주식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제 9 조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제 1 항의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③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종류주주총회
- ④ 본조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기일은
  1.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2.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상환기간 최종일 이전에 상환되지 않은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환하는 날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 ⑤ 상환청구기간은 본조 제 4 항 1 호을 준용한다. 다만, 제 4 항 제 1 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 ⑥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⑦ 본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⑧ 본 회사가 발행된 종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⑨ 본 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⑩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본항의 유상증자에는 주식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 11 조 (전환주식)

-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 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전환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는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한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⑥ 본 회사는 본 조의 전환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⑦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2 조 (주식양도의 제한 및 양도제한)

- ① 주식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본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본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13 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 제 14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사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본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3자에 대하여 상법 제 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 2.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으로 본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상법 제 397조, 제 397조의 2, 제 398조 및 제 411조를 위반한 경우
  - 4.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385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해임을 권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경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본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 **제 15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6 조 (명의개서 등)**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제 18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일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 19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3 장 사 채**

#### **제 21 조 (사채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 **제 22 조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23 조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24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개월이 초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이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6 조(명의개서 대리인), 제 19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27 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2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4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0 억원 미만인 경우 총회일 10 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제 3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31 조 (주주총회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4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3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 주마다 1 개로 한다.

### 제 3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3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3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대표이사 · 이사 · 이사회

### 제 39 조 (이사의 원수)

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7 명 이내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 억에 이르기 전까지는 1 인으로 할 수 있다.

### 제 40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 제 42 조 (이사의 결원 및 보선)

- 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제 4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초대 대표이사는 발기인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 ② 회사의 이사가 2 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4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5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 47 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 4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에 있어 상법 제 383 조 제 1 항 단서 및 동조 제 4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법률이 정한 주체가 회사의 의결권한을 가진다

#### 제 49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50 조 (상담역 및 고문)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제 5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6 장 감 사

#### 제 52 조 (감사의 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53 조 (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되어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54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 55 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53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6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57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7 장 회 계

### 제 58 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5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 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0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61 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62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 63 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의 지급일은 위 결의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64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제 65 조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에 따라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상실하거나, 무상증자 등의 사정으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 ④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이익배당을 실시한다.
  - ⑤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제 66 조 (시가발행)

- ①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액면미달의 발행으로 할 경우,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 8 장 기 타

#### 제 67 조 (사규 등의 제정)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제 68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영업년도) 회사의 최초 영업년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최초의 본점소재지) 회사의 최초 본점소재지는 상법 제 39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도록 한다.

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스키놀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23년 03월 03일

**주식회사 스키놀**